

제 1311 호

1986. 9. 1.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편집인: 풍 보 관 이 왕 우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신경	풍보관		기자	공보제작
집수일자	1986. 9. 1.	기자	기자	보도제작
처리과	기자과	기자	기자	기자

시 보

차례

◎ 규칙

- 제 2144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2
 제 2145 호 :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체행정처분규칙개정규칙 3
 제 2146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자교육설시규칙 25
 제 2147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3

◎ 고시

- 제 638 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위치고시 33

◎ 사본

공											
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729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 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2144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 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4 항 다음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학과 및 기능시험)를 타시. 도에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 실시 시. 도에 당해자의 응시원서. 사본 및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종합성적표. 사본을 송부받은 후 나머지 시험만을 실시한다.

제 5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면허과장은 응시원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철상부에 접수문으로 기록하되 시험실 시 일자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원기시험 당안지는 별지 제 2 호 서식으로 하되, 수동식으로 체점하는 경우에는 붉은 색 연필로 체점하여야 하며, 오래된 정진시에는 두 줄을 치고 학과과장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④ 기능시험은 제 2 층 소형면허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응시자는 반드시 앞좌장구(헬멧)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기능시험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출발하되, 시동이 꺼져 응시자의 발이 땅에 닿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3. 전자체검 시설이 가설되지 않았거나, 고장시에는 시험 소요시간을 육상경기용 타입워치로 측정한다.

⑤ 시장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속히 발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규칙 제 39조제 1 항 2호에 규정된 제 2 층 소형면허시험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라." 형 코오스 중 굴절코오스와 곡선코오스의 전집만을 실시한다.

제 21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p>② 가능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관이 동승치 않고 채점표만 채점기에 삽입한 후 응시자가 단독으로 주행 응시케 한다.</p> <p>제 25조 제 3 항 다음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 운전면허시험 합격자가 운전면허증을 본인의 주거지로 우송하여 끌것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송료를 첨부케 하고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p> <p>제 3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34 조(법률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과 처분절차는 법 제 78 조 및 규칙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35 조 삭 제</p> <p>제 36 조 삭 제</p> <p>제 37 조 삭 제</p> <p>제 38 조 중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p> <p>별지 제 11 호 서식과 별지 제 12 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별지 제 11 호 서식 삭제</p>	<p>별지 제 12 호 서식 삭제</p> <p>부 칙</p> <p>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의 가능시험은 198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개정 규칙을 이거 공포한다.</p> <p>198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p> <p>◎서울특별시규칙제 2145</p> <p>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 78 조 및 동법 제 81 조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초·성기 및 자동차의 운전습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할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 104 조 및 동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69 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p>
---	--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 및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증, 피해의 정도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할인한 점수에서 상제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철수등)을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벌점=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 상제치)
3. "처분별 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별점=누산벌점-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 상제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동법 제80조에 의하여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제 4조(누산점수의 관리) ①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한다.
②제 1항에서의 3년간이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이규칙 시행이전의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5조(벌점의 소멸) ①처분별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0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별점은 소멸한다. 이 경우 기간 산정은 년월일을 기준한다. 이하 이조에 같다.

②과거 1년이상 위반 및 사고가 없었던 운전자가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도 인하여 받은 벌점이 30점 미만인 경우 그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3월 이상 위반 및 사고없이 경과한 때는 그 벌점은 소멸한다.

제 6조(누산점수 공제) ①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별표 1)에 도달하여 면허를 취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례점수를 누산점수에서 공제한다.

1.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겹거하거나 신고하여 겹거하게 한 운전자 45점	② 면허정지는 법규위반시 정지처분 개별기준(별표3)의(1) 통고서불신목(2) 즉시회부(형사입건 포함) 항목 및 교통사고 야기시 정지처분 개별기준(별표4)의(1) 사고결과이 따른 벌점기준과 (2)조치 등 품이상에 따른 벌점기준에 의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인 때에 정지처분하되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벌점이 30점 이상일 때는 그 위반 또는 사고발생일 이전의 처분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정지기간을 산정한다.
2. 훈장 100점	제 8조(정지처분기간 산정) 정지처분 기간은 당해 면허증을 보유한 시간부터 계산하고, 하루 보관한 24시간을 1일로 하되 그 외 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3. 포장 90점	제 9조(면허의 취소처분 절차) ① 면허를 취소하는 때는 당해 운전자를 출석시켜 멀지 1호 서식에 기재된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별표2) 제5항의 서성검사 미필로 차도의 경우와 상황을 이유없이 운전면허 취소를 과한 선출을 부하는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표창 80점	
5. 국무총리표창 60점	
6. 내무부장관 표창 45점	
7. 청안본부장 표창 35점	
8. 서울특별시장(지도지사 포함) 표창 25점	
9. 경찰국장 표창 15점	
10. 경찰서장 표창 10점	
11. 무사고운전자등의 표시장 45점	
② 제 1 항제 2호 내지 제 11호 중의 특례점수는 각 훈격의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포상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또한 공개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의 모든 포상에 대한 점수는 공제할 수 없다.	
제 7조(행정처분기준) ① 면허취소는 벌점·누산점수 조과로 인한 면허취소의 기준(별표1)에 도달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별표2)에 각각 해당하는 때에 처분한다. 면허취소의 경우, 제 6조 제 1항의 특례점수를 공제한 후 별표1의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② 면허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별표 1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표 2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각각 들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경우 경찰서장이 진술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시장에게 진술을 들어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면허취소 대상자의 진술과 취소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전자의 면허증을 즉시 회수하고 진술을 들은 날로부터 취소처분하되, 당해 자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교부하며,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면허증과 진술서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없이 취소상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 3호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으로부터 제 3항에 의하여 취소상신을 받은 시장은 취소해당자에 대한 운전면허대장의 기록사항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취소유가 명백한 때는 취소처분한 후 당해자에게 별지제 2호서식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 취소사실을 경찰서장에게 시달한다. 이 경우 취소처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조 (면허의 정지처분 절차)

① 경찰서장은 운전자가 별표 3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위반 및 사고 야기시 별점을 별지 4호서식의 위반사항 기록자료표 및 별지제 5호서식의 사고사항 기록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별점 및 제 1항에 의하여 산출된 처분별점이 제 7조 제 2항에서 정한 정지처분 기준에 도달하면 별지제 6호서식으로 정지처분을 결정한 후 별지 2호서식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당해자의 주소지와 연락처에 통지하고 결정일자 순으로 별지 7호서식에 기록후 면허증 반납일로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시 당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때는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활용한다.

③ 면허정지처분을 집행하는 때는 별지 제 8호서식의 교정교육통지서로 교정교육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①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하고 별지제 9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지처분기간을 감경 한다.

구 분 교정 교육시험성적	처분별점 중에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별점 중에 사고야기도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80점 이상	20일 감경	10일 감경
60점 이상	15일 감경	8일 감경
80점 미만		
60점 미만	10일 감경	5일 감경

②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제 1항에 의하여 감경한 잔여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 경우 벌점누산은 그려 하지 아니하다. 다만, 처분별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① 상습적 위반 및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는, 경지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자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이미 받은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개시일이 과거 10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포함된 경우만을 말한다)을 받은 회수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가산한다.

과거 10월 이내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회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 음	없음 (당해 처분별점에 따라 1일 1일로 계산)
1 회	30일 가산 (당해 처분별점일수 + 30일)
2 회	60일 가산 (당해 처분별점일수 + 60일)
3 회	90일 가산 (당해 처분별점일수 + 90일)

② 제 50조 제 2 항에 의거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면허증을 지정일까지 반납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그 기일 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성지처분 기간에 면허증 반납시연 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집행한다. 다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는 적성검사시에 그 면허증을 회수하고 회수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제 13 조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한계 등) ① 정지처분 집행은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고 정지처분 집행일 수는 계속적으로 365 일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이 규칙에서 벌점을 감경하는 때와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감경 또는 가산함에 있어서 단자리수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면허증등 반환) ①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끝난 후 보관하였던 면허증등에 대하여 본인이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본인의 가족이 면허증등을 반환요구할 때는 본인의 가족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반환하되, 수령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실행처리대장 (별지제 5호)의 수령자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이 일요일

이거나 공휴일인 때는 면허증 등의 회수시간에 관계없이 그 전날의 공무시간이 끝나기 1시간전에 반환하며, 토요일오후 1시이후에 정지처분이 끝날때도 또한 같다.

③ 제 2 항의 경우로 면허증등을 반환한 때는 면허정지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금지 처분을 받아 운전금지 기간중 출국하게 되어 그 면허증을 반환요구할 때는 자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타법령위반자 행정처분)

① 산림법 제 94조 동법시행령 제 93조에 의한 운전 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은 산림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② 산림법 위반으로 인한 정지처분은 산림법위반운전자 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별표 5)과 같다.

③ 산림법에 의하여 집행된 정지일수에 상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검사의 무혐의 물기소처분을 포함한다.)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교통 사고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부 칙	전 포 함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행복증 제 2호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한다.
②(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시행규칙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별표16)에 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시행규칙 별표 16의 1) 취소처분 기준중 제7호 "출석 기일 또는 범칙금 납부기일경과 불출석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 범규위반시 정지처분 개별 기준(별표3)의 (2) 즉 심회부(형사임)	③(무위반·무사고 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별표 3 및 별표4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시행규칙중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무위반·무사고 기간·운전면허 행정처분 회수 및 누산별점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1)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④(규칙폐지) 종전의 서운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규칙은 폐지 한다.

기 간	벌 점 또 는 누 산 점 수
1년 간	121 점 이상
2년 간	201 점 이상
3년 간	271 점 이상

(별표2) 운전면허취소처분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 점	내 용
1	교통사고야기 도주	제 50 조	취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38·10 제 1311 호 시

보 1986. 9. 1

법령 번호	위반 항목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별첨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하거나 나치게 함.	제 41 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액 1 밀리리터에 알콜 0.5 밀리그램, 호흡 1 리터에 알콜 0.25 밀리그램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나치게 한 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나치게한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찰관의 증거 요구에 불응한 때
3	타인에게 운전면허대여(도난, 분실 체외)	제 78 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소지자가 유면허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운전케 하였을 때 ○ 면허취득자가 타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로 운전 하였을 때
4	결핵 사유	제 78 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팔의 팔꿈치 팔꿈이상을 잃은 사람 • 양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앓아 있을 수 있는 사람 • 마약, 대마, 환경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일련 번호	위반 항 목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벌 침	내 용
5	적성검사미실 또는 불합격(수시 적성검사포함)	제 78조	취소	○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성기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를 미루었거나 불합격한 때
6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제 78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하였을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 78조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성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무적 차량 운전포함)	제 78조	취소	○ 운행장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 차량운전포함)하였을때 (고의 과실 불문)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 78조	취소	○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 살인 및 사체유기· 이용되었을 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유괴, 불법 강금에 이용되었을 때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 78조	취소	○ 산림법·제 94조와 동시행령 제 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당국의 고발이 있는 때 · 원목 또는 죽강재(足乾材)인 부정임산물을 1세제곱미터 이상 치재 또는 운송하였을 때

38-12 제 1311호 시

보 1986.9.1

일련 번호	위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원목 또는 죽장재이외의 부정임 산물(소나무원목 1세계곱미터 의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 을 적재 또는 운송하였을 때

(별표 3)

(1) 통고처분 항목

일련 번호	위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1	신호 또는 지시 에 따를 의무위 반(정지선 위반 포함)	제 5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기의 신호 또는 경찰관(보조 차포함)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교차로의 적전이나, 정지선이 있을 때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때
2	통행구분위반(중 앙선침범에 한함)	제 12조 ③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중앙우측을 통행하지 아니 한 때 (최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3	차선위반(진로변 경금지위반포함)	제 13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때 ○ 도로중앙 우측에 2이상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에 위반한 때 ○ 진로변경을 금지하도록 특별히 구 획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
4	제한속도위반 (20km/초 과부터)	제 15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속도 및 시장이 지정하는 제 한속도를 위반한 때

일련 번호	위반 항 목	적용 법 조 (도로교통법)	별 침	내 용
5	앞지르기 금지 위반	제 20 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차와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할 때 앞지르는 행위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앞지르는 행위 ○ 교차로, 도로의 보통이 부근, 경사로, 굽상, 급경사의 내리막 및 시장이 정하는 장소 ○ 법령규정과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지 시행하는 차를 앞지르는 행위
6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제 24 조 제 48 조 제 3 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한 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한 때 ○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
7	안전운전의무 불 이행 (난폭운전에 한함)	제 44 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로 (원칙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난폭운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진입 (구차선 변경) • 지그재그 운전시 • 도로의 좁우로 현들을 급조작 및 급제동하는 행위 •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일단 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한 때

38-14 제 7311 호 시

보 1986. 9. 1

(2) 특수회부(형사입건 포함) 항목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형사입건)	제 41조 ①	100	○ 혈액 1밀리미터에 대하여 0.5밀리그램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밀리그램 이상 술주하고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축정에 활용한 때(형사입건)	제 41조 ②	100	○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찰관의 청정요구에 불응한 때
2	출석기간 또는 법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 99조 제 120조	90	○ 출석지시서에 의한 출석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칙금 납부증지서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법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석기간 또는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거나 못한 때

(별표 4)

교통사고아기서 정지처분 개별기준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사망 1명마다 6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교통사고	중상 1명마다 20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7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구 분		벌 침	내 용
물교 적통 회사 해고	10만원마다	1	경비업소로 떠가된 경비공장의 견적에 의한 차의 피해금액과 화물등의 피해금액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 사항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벌 침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제 50 조 제 1 항	30 60	교통사고 즉시 (그때, 그 자리에서 문)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네 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때.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때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불이행	제 50 조 제 2 항	7 15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하였 을 때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후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한 경우 를 포함한다) ○경찰관 (경찰관서 포함)에게 신고하 지 아니한 때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 기후 도주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를 포함한다)

(비 고)

1. 교통사고 야기시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2.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3.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 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4.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 사고발생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5. 물적피해액 10만원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물적피해에 따른 벌점은 50점을 넘지 못한다.
 6.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측의 물적피해(차 및 화물의 치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산림법위반운전자면허정지처분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 항목	적용 법조 (산림법)	정 기 간	적재 또는 운송 용량
1	원목 또는 죽장 재(足長材)인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제 94 조	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제곱미터 이상 1세제곱 미터 미만 ○ 0.5세제곱미터 미만
2	원목 또는 죽장 재 이외의 부정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제 94 조	6 월 3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 원목 0.5세제곱미터 이상 1세제곱미터 미만의 시가 에 해당하는 수량 ○ 소나무 원목 0.5세제곱미터 미만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

제 1311 호 시

보 1986.9.1 38-17

(별지 제 1호)

진술서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허위없이 진술합니다.

취 소 내 상 자	주 소			소속 또는 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면허 번호			(전화)	
취소 사유 고지	(구체적으로 기록)				
진 술	일	시	장 소		
	내 용				

위 진술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합니다.

19

진술자

한

입회자

소속

계급

성명

한

서울특별시장
(경찰서장)

귀하

38-18 제 1311 호 시

보 1986. 9. 1

(별지 제 2호서식)

제 호	자동차운전면허	<input type="checkbox"/> 정지 <input type="checkbox"/> 취소	(통지서)
① 성 명			
② 주 소			
③ 면허종별 및 번호	시 도 제 종 체 호		
④ 차량번호			
⑤ 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취소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⑥ 사유			
<p>도로교통법 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p> <p><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동법 제 79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조 제 1항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 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동법 제 79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조 제 1항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 경찰국 교통(면허)과에 운전면허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p>서 울 특 별 시 장 ①</p> <p>경 찰 서 장</p>			
106-325 일(2) 86.4.30 수요		(몇면의 기재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0 mm X 268 mm (신분용지 54g/m ²)	

제 1311호 시

보 1986.9.1 38-19

(별지 제 2 호식) (뒷면)

* 알려드립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날기로 결정된자가 처분집행 예정일까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 본래의 처분일수에 차이된 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됩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11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별지 제 3 호서식)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서

운 전 면 허 처 분 사 항	주 소	소속또는 직 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 허 번 호	연 락처	
위 반 별 처 분 내 용	적 용 법 조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1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38-20 제1311호 시

보 1986. 9. 1.

(별지제4호서식)

년 월 일

위반사항기록자료표										
기재요청		결정일자	부정적정지정	발행자	담당	계정				
1) 인도시 컴퓨터용, B1 연결을 사용 2) 자료포를 전면 또는 표면에 낙서하지 않것 3) 자료포를 주기거나 떼지 않것 4) 길재인이 같은 것은 처리하지 않을 5) 숨기 주의 6) 보기 : (X)(X)(X)(X)(X)		제작자	제작자							
		작성일자	작성일자							
		작성경찰서	작성경찰서							
		연번번호	연번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자료구분	1. 조상 2. 풍고(면허증번호) 3. 풍고(면허증미화수)									
	승									
인적사항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학습비고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차량번호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량명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주 1. 앞금 2. 정지 3. 뒷금										
종류 : 금속금										
제작일 : 1986. 9. 1.										

2105-303. 일(1)

200 mm × 300 mm 용지 (폭) 120 g / m²

85.1.28 총 2

제 1311 호 시

보 1986.9.1 38-11

(별지 제 5호 서식)

년 월 일

사고사형기록자료표

기재요령	경찰서		발달계정	날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1) 반도사 컴퓨터용 81연필을 사주					
2) 자료로 듣거나 혹은 후면에 남겨하지 않것					
3) 자료들은 고지하나 놓지 않것					
4) 금재민이 고는 것 처리하지 않음					
5) 증거 주는					
6) 보기					
7) 증거					
8) 증거					
9) 증거					
10) 증거					
11) 증거					
12) 증거					
13) 증거					
14) 증거					
15) 증거					
16) 증거					
17) 증거					
18) 증거					
19) 증거					
20) 증거					
21) 증거					
22) 증거					
23) 증거					
24) 증거					
25) 증거					
26) 증거					
27) 증거					
28) 증거					
29) 증거					
30) 증거					
31) 증거					
32) 증거					
33) 증거					
34) 증거					
35) 증거					
36) 증거					
37) 증거					
38) 증거					
39) 증거					
40) 증거					
41) 증거					
42) 증거					
43) 증거					
44) 증거					
45) 증거					
46) 증거					
47) 증거					
48) 증거					
49) 증거					
50) 증거					
51) 증거					
52) 증거					
53) 증거					
54) 증거					
55) 증거					
56) 증거					
57) 증거					
58) 증거					
59) 증거					
60) 증거					
61) 증거					
62) 증거					
63) 증거					
64) 증거					
65) 증거					
66) 증거					
67) 증거					
68) 증거					
69) 증거					
70) 증거					
71) 증거					
72) 증거					
73) 증거					
74) 증거					
75) 증거					
76) 증거					
77) 증거					
78) 증거					
79) 증거					
80) 증거					
81) 증거					
82) 증거					
83) 증거					
84) 증거					
85) 증거					
86) 증거					
87) 증거					
88) 증거					
89) 증거					
90) 증거					
91) 증거					
92) 증거					
93) 증거					
94) 증거					
95) 증거					
96) 증거					
97) 증거					
98) 증거					
99) 증거					
100) 증거					
101) 증거					
102) 증거					
103) 증거					
104) 증거					
105) 증거					
106) 증거					
107) 증거					
108) 증거					
109) 증거					
110) 증거					
111) 증거					
112) 증거					
113) 증거					
114) 증거					
115) 증거					
116) 증거					
117) 증거					
118) 증거					
119) 증거					
120) 증거					
121) 증거					
122) 증거					
123) 증거					
124) 증거					
125) 증거					
126) 증거					
127) 증거					
128) 증거					
129) 증거					
130) 증거					
131) 증거					
132) 증거					
133) 증거					
134) 증거					
135) 증거					
136) 증거					
137) 증거					
138) 증거					
139) 증거					
140) 증거					
141) 증거					
142) 증거					
143) 증거					
144) 증거					
145) 증거					
146) 증거					
147) 증거					
148) 증거					
149) 증거					
150) 증거					
151) 증거					
152) 증거					
153) 증거					
154) 증거					
155) 증거					
156) 증거					
157) 증거					
158) 증거					
159) 증거					
160) 증거					
161) 증거					
162) 증거					
163) 증거					
164) 증거					
165) 증거					
166) 증거					
167) 증거					
168) 증거					
169) 증거					
170) 증거					
171) 증거					
172) 증거					
173) 증거					
174) 증거					
175) 증거					
176) 증거					
177) 증거					
178) 증거					
179) 증거					
180) 증거					
181) 증거					
182) 증거					
183) 증거					
184) 증거					
185) 증거					
186) 증거					
187) 증거					
188) 증거					
189) 증거					
190) 증거					
191) 증거					
192) 증거					
193) 증거					
194) 증거					
195) 증거					
196) 증거					
197) 증거					
198) 증거					
199) 증거					
200) 증거					

* 무장신고는 경상자에 추가 200

206-302 일(1)

69, 1.28승인

38-22 제 1311 호 시

보 1986.9.1

(별지 제 6호 서식)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성명:

2. 주소: 시 구 동 가 번지 호
도 군 면

3. 면허번호:

4. 차량번호: 시
()
도

5. 사유(위반내용):

6.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7. 처분내용: 운전면허 효력 정지

8. 처분기간: 198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위와 같이 운전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결정함.

계장	파장	서장

〈별지제7호서식〉

운전면허정지처분집행처리대장

卷之三

古文真賞

38-24 제 1311 호 시

보 1986.9.1.

(별지제 8호서식)

제 호

교정 교육 통지서

① 면허번호 :

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교육을 통지 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교육장소

년 월 일

경찰서장

2106-26 일(1)
1985.1.28승인

95 mm X 134 mm (신문용지 54g/m²)

(별지제 9호서식)

교육필증

일련번호	경인

면허번호 :

성명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교양구분

경기

임시

교정

년 월 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인사 담당자

2106-25 일(1)
1985.1.28승인

81 mm X 55 mm
(인쇄용지(특급) 120 g/m²)

제 1311 호 시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자교육 실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9. 1
서울특별시장 염 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46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자교육 실시 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자교육 실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의 기준 및 절차를 시행 규칙 제 69 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알차고, 실효성 있게 실시, 운전자의 자질을 높이고 교통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자와 성기적 성검사를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2. 도로교통법 일반 및 교통사고를 예방한 자의 교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보 1986. 9. 1 18-25

3. 교통여건의 변화 및 교통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때 실시하는 교육

제 3 조 (교육 실시 주관) ①정기교육과 별표 1에 의한 교정교육은 도로교통 안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지부 (이하 "지부"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임시교육 주관은 교육시마다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정기교육) ①정기교육은 신규 면허증을 교부받을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교부전에, 정기적성검사를 적성검사 수험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1. 교육시간은 매회 2시간씩 실시한다.

2. 교장소는 별표 2와 같다.

3. 교육내용은 별표 3에 의한다.

4.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청각교수 및 흥선교육 방법에 의한다.

5. 교육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수강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 전에 주민등록증과 합격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 입장시킨다.

다. 교육을 친한 자이 예상되는 협

38-26 제 13.11 호 시

보 1986.9.1.

최 이사장 명의로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교육필증을 발급하 되 교육담당자가 확인필 인을 날인한다.	일은 제외한다. 3. 교육통지는 서울특별시운전면허검 수제 행정처분규칙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을 준용 하여 경찰서장 명의로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교정교육 통지서 를 발부한다.
라. 협회지부에서는 교육실시 결과 를 익일 09:00 깯 수강신청서를 근거로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 한 교육이수자 명단과 교육실시 통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마. 경찰국 면허과장은 본인이 제 출한 교육필증과 협회에서 작성 제출한 명부를 확인하여 면허증 을 교부한다. 다만, 정기적 성경사 대상 교육은 교재 배부로 대체 할 수 있다.	4. 교육장소는 별표 2에 의한다. 5. 교육내용은 별표 3에 의한다. 6.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청각교육 및 문제운행식 출제방법을 활용한다. 7. 교육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5조 (교정 교육) ① 교정 교육은 별표 1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자 및 교 통사고 야기 자동 서울특별시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처분점 수가 30점 이상으로서 행정처분통 지를 받은 자동 회망자에 대하여 실 시한다.	가. 수강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 여야 하며, 수강전에 주민등록증 과 교정교육통지서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입장시킨다.
1. 교육시간은 매회 4시간(강의 및 시청각 3시간, 시험 1시간)씩 실시 한다. 2. 교육시간은 매일 13:00~17:00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	나. 교육을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협 회 이사장 명의로 별표 4에 의 한 시험성적통지서를 교부하되 교육담당자가 확인필인을 날인한다. 다. 협회지부에서는 수강신청서에 의 한 교육이수자 경부(별지 제 2 호 서식)를 작성, 간인한 후 일 자별 말미에 통계를 첨부 그 정 본을 시장에게 교육실시 익일 제출한다.

<p>8. 제 1호의 교정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 후 별표 4에 의한 시험성적통지서를 본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감경 받도록 한다.</p> <p>제 6조 (임시교육) 시장은 교육필요시마다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실시한다.</p> <p>제 7조 (교육기록의 보존) ① 교육에 관한 기록은 교육이수자 명부와 교육일지의 보존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기타 서류는 1년간으로 하되 폐기일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로 한다. ② 폐기일자는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의한다.</p> <p>제 8조 (교육실시상의 유의사항) ① 경찰서에는 교통간부가 차내에서 운전석에 의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교정교육 담당자는 사전에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교육장에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철석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9조 (확인감독) 시장은 협회지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한다.</p> <p>제 10조 (보고) 협회지부장은 매월 교육실시결과를 시간에, 시장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부 칙	

(별표 1)

교정 교육 대상 (11 개 항목)

번호	위 반 내 용	법 조
1	주취증 및 전금지	제 43 조 12
2	운전기간 또는 법칙금 부여기간 만료일부터 60 일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 99 조 제 120 조

38-2611-제 1311 호 시

보 1986. 9. 1

번호	위반 내용	법 조
3	교통 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제 50조 ①
4	교통 사고 야기시 신고불이행	제 50조 ②
5	신호위반	제 5조
6	중앙선침범	제 12조
7	차선위반	제 13조
8	속도위반 (20km/h 초과시)	제 15조
9	앞지르기 금지	제 20조
10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제 24조 제 48조 3호
11	납품운전	제 44조

(별자 2)

교 육 장 월 랍 표

구 분	장 소	위 치	교 육 고
정 기	1, 2종 면허시험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9 (강남시험장)	
"	"	서울 도봉구 상계동 608 (도봉시험장)	
"	원동기, 소형면허시험장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0 (한남교육장)	
교 정	교통 안전교육 중앙화 관	서울 중구 신당5동 436 (1. 배명교)	

(별자 3)

운 전 자 교 육 파 류

○ 정기 교육

교 육 과 목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1.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1) 교통여건 주제 (2)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강의 또는 통신교육

제 1311 호 시

보 1985. 9. 1 38-29

교육과목	교育내용	교육방법
2. 교통도덕	(1) 운전자의 자명 (2) 운전자의 자세	강의 노는
3. 교통방법	(1) 자동차의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의무 (3) 고속도로운에 있어서의 특례	강의 노는
4. 자동차의 점검	(1) 점검요령 (2) 고장발적 및 조치요령	

○ 암시교육

교육내용	교육방법
1. 교통여건의 변화	강의 노는
2. 교통관제 개혁 개정사항(개정 또는 폐지사항 포함)	통신 교육
3.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	

○ 교정교육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1. 교통도덕	(1) 운전자의 자명 (2) 운전자의 자세	시청각 및 강의
2. 교통질서 지키기	(1) 교통질서의 중요성 (2) 운전자 실천사항	
3. 교통법규	(1) 자동차의 통행방법 (2) 운전자 준수사항	

(별표 4)

시험성적통지서		학 인
성명:	면허번호:	
시험성적:	점()	25mm X 17mm
교통안전 교육시험 성적을 동지합니다.		
년 월 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 () 은 한글로 기재		143mm X 77mm 금류나물수동기

38-30 계 1311 호 시

보 1986.9.1

(빙자 제 1 호서식)

○ 신규자 교육증

자동차운전교육수강신청서

		일련 번호			
면허 시험 응시번호 :		면허	1 종	보통·대형·특수	
		종별	2 종	보통·소형·원자	
주 소					
성 명		성 별	주민 등록		번 호
		남	여		
위와같이 신규교육을 수강교자 신청합니다.					
198					
위 인정인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김하					
32 절지 (신문용지)					

제 1311 호 시

보 1986.9.1 38-31

○ 적성검사

자동차운전교육수강신청서

		일련번호	
운전면허번호:		면허	1종 보통·대형·특수
		종별	2종 보통·소형·원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남 여	
운전하는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 특수	교동사고원인	
차종	자가용 버스, 승용, 화물, 2륜	법규위반내용	
운전경력	년 개월	금년 들어 지금까지 교정교육을 받은 회수	
위와같이 적성 교정 교육을 수강교자 신청합니다.			
198			
위 신청인		인	
도로교통안전위원회 이사장		서명	
32장 기 (신분증 기)			

38-32 제 1311 호 시

보 1986.9.1

(별지 제 2호서식)

자동차운전자 교육이수자명부

일련번호	수강년월일	면허종별	성명	비고

(16 절지 신문용지)

- * 시험성적은 비교란에 기재
- * 경찰서는 면허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 3호서식)

목적증	일련번호	검인

면허번호 :

성명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교양구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임시	<input type="checkbox"/> 교정
년 월 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2106-25 일(1) 85.1.28 충인		81 mm X 55 mm 인쇄용지(특급) 120 g/m ²)	

제 1311 호 시

보 1986. 9. 1 3.3-35

서울특별시 금수조례 시행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9. 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규칙 제 2147 호

서울특별시 금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공사의 하자책임)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 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
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현금(시선판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하 "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자기할수표를 포함한다)을 하자 보
증으로 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
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남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
금액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4. 건설공체 조합법에 의하여 건설
공체 조임이 진행하는 보증서, 전
기공체 조합법에 의하여 전기공체

로 6조(1)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신
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
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5. 국채, 지방채 기타 재국부창고
이 정하는 채권

6.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제 6조(공사의 하자책임) 제 5항중
"상수도공체를"은 "현금에 갈음
하여 남부한 제 2항 규정의 보증
서 또는 증권을"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문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38 호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위치고시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설치조
례 제 2조(조례 제 2093 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강관리사업소의
위치를 결정 고시한다.

- 사업소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 번지 22호
삼익빌딩 5층

1986. 9. 1

서울특별시장

38-34 제 1311 호 시

보 1986. 9. 1

사 령

1986. 8. 30

령 제 381 호

성명	발령 주서	현부서	직급
이 준 선	한강관리사업소	시민과 우산구	지방행정주사
김 대 흥			지방행정주사보
이 역 환			
김 성 훈			
최 중 육			
신 흥 주			
최 준 일			
이 우 경			
노 태 석		마동 병원	지방행정서기
윤 경 학		공무원교육원	
서 종 훈		북부건설사업소	
이 영 진		성동동	
배 종 준		대문구	
이 중 복		중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지 용			
하 경 식		동대문구	
이 병 상		성동구	

령 제 382 호

성명	발령 사항	현부서	직급
조 재 봉	한강관리사업소	하수과	지방토목기사
김 성 정		주택계량과	
최 해 인			지방토목기사보
도 성 철		구로구	
이 무 영		종로구	지방토목기원
김 능 수		중도봉구	
김 성 곤			

제 1311 호 시

보 1986. 9. 1 38-35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홍태	한강관리사업소	영동포구	지방토목기원보
김재운	"	로봉구	지방화공기사
김정호	"	도봉구	지방화공기원
김용남	"	성동구	"
홍성두	"	동포구	지방화공기원보
박희창	"	포북구	지방농립기사
권혁수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농립기사보)	마성구	농립기사보
안재현	한강관리사업소	동작구	지방농립기사보
남상수	" (지방농립기원)	양정구	농립기원
이율근	한강관리사업소	종로구	지방농립기원
윤석암	"	관악구	"
장경호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농립기원보)	강서구	농립기원보
황인구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농립기원보)	은평구	"
이경열	한강관리사업소	건설자체사업소	지방전기기사보
전명수	"	동축구	지방수산기원

1986. 9. 6.

령 제 383 호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직급
이철범	구로구	2호봉	지방화공기사보시보
이성재	동대문구	1호봉	"
성서영	한강관리사업소	4호봉	지방기계기사보시보
모봉국	뚝도수원지사무소	3호봉	지방화공기사보시보
이영석	일사수원지사무소	"	"
박석률	도봉구	"	"
박병문	영등포구	"	"
류관식	관악구	4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남궁용	동대문구	3호봉	"

38-36 제 1311 호 시

보 1986.9.1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직급
김용희	봉악문	3 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이경규	봉악문	1 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김완수	봉악문	2 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이류창	봉악문	3 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박설재	봉악문	4 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최재태	봉악문	5 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전조기	봉악문	6 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조성경	봉악문	3 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이김박	봉악문	6 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박준	봉악문	4 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송근원	봉악문	5 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장동호	봉악문	3 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최전환	봉악문	2 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황임방	봉악문	3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박종운	봉작포	3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백운석	봉작포	1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합송	봉작포	2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최석우	봉작포	3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서우조	봉작포	4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김김우	봉작포	5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정명숙	봉작포	6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경명수	봉작포	7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명경우	봉작포	8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정명선	봉작포	9 호봉	지방간호원시보

제 1311 호 시

보 1986.9.1 38-37

1986.9.1

령 제 384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이철수	중구	8	지방행정사무관	중구	건설관리과장직대	지방행정주사		
유지관	용산구	9		용산구	민방위과장직대			
최종문	관악구	8		관악구	청소과장직대			
김영남	동작구	8		동작구	위생과장직대			
박희수	내무부	8	지방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율령직준비단파견	지방행정주사		
(윤길피준비 단파견)								
권대경	성북구	8		성북구	세마을과장직대			

령 제 38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부서	직급	호봉	현부서	직위	직급		
이중호	세종문화회관	지방전기기과	5	세종문화회관	전기계장직대	자발인기기식		
이재형	동작구	지방농림기과	8	동작구	공원녹지과장직대	자방농림기사		
유오석	강동구	지방토목기과	6	강동구	도시정비과장직대	기량도보1사		
노경찬	도봉구		6	도봉구				
임동혁	한강관리사업소	지방화공기과	6	환경과		지방화공기사		

령 제 38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임성수	시립대학	사무국장	9	지방서기과	시립대학	사무국장직대	지방행정사무관	
조대룡	마포구	건설국장	4		마포구	건설국장직대		
전장하	성북구		6		성북구			
윤정중	강서구		9		강서구			
질기식		도시정비국장	8	지방건축기정		도시정비과장직대	지방건축기과	
임동국	성동구	건설국장	5	지방토목기정	성동구	건설국장직대	지방토목기과	

38-38 제 1311 호 시

보 1986.9.1

형제 387 호

설명	발행부서	현부서	직급
이충근	환경청파전 ('86.9.1 ~ 86.10.31')	도봉구	지방환경기사보시보

서 울 특별시